전남대학교 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

1 교과목 개요

교과목명	교육봉사활동	교과개설	매학기 개설
교과코드	EDU9005(학부) EED5114(교육대학원)	담당교수	교직부장
이수학점	2학점	이수대상	2009 이후 입학 교직이수자

2 교과목 이수 절차

- O [3.] 봉사활동 실시 절차]에 의거 재학 중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
- O 실시한 봉사 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※ 수강신청 시 교과코드 확인: 학부(EDU9005), 교육대학원(EED5144)
- O **포털 상에 승인된** 확인서를 토대로, 학기말 교직부에서 수강신청 학생의 **학점 부여(**P/F)

3 봉사활동 실시 절차

① 교육봉사활동	•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 계획을 포털에 등록(포털 상에서 직접 입력)	
계획서 제출	•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	

② 교육봉사활동 •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및 승인

계획서 승인 •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

③ 교육봉사활동 • 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가능
(실제 활동) 실시 •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

④ 교육봉사활동 •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 등록(<mark>서식1 활용, 스캔 업로드</mark> 확인서 제출 •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』

 ⑤ 교육봉사활동
 •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및 승인

 확인서 승인
 •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

▲ 위 절차에 의거 재학 중 봉사를 실시하며,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**수강신청**

4 봉사 내용 인정 범위

- O 1일 최대 8시간 인정
- O 교통비 등 실비에 이외 **보수나 금전(장학금 포함)**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
- O 봉사 대상이 유, 초, 중, 고교생이 아닐 경우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(성인 일반인,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)
- O 보조교사, 학생 지도, 방과 후 수업 지도 등 **교육관련 활동**일 경우에만 인정
- O 청소, 시험감독,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 인정 불가
- 해외 봉사는 인정 불가

5 **봉사 가능 대상 기관**

- O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: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(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)
- O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: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
- **영리 기관·단체**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제한(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)

6 유의 사항

- O [3] 봉사활동 실시 절차] 준수
- O 학생 본인이 포털에 등재한 계획서 및 확인서의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
- ·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,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
- · 교육봉사활동 **종료 후**. 확인서 제출 및 **승인 취득 여부** 확인
- O 계획서 및 확인서 내용 미비 시 미승인될 수 있음(사례 참조)
- · 사례1: 기관 정보. 소재지. 활동 일지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계획서
- · 사례2: **기관 직인, 기관명, 활동 시간**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
- · 사례3: **화질이 불량(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**·업로드) 한 확인서
- · 사례4: 계획서 내용에 비해 총 봉사시간, 봉사 기관 등이 다른 확인서
- 시간 부풀리기, 위장 활동, 허위 확인서 확인 시 이수 학점 취소

7 **기타**

- O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가능
- O 관련 문의: 소속 학과실,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, 교직부(☎ 530-5922)